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105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최서현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주진영, 염성훈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D의 2020. 1. 29. 자 주식회사 E에 대한 469,693,600원의 이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78,76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피고는 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또한 축산물 유통, 수입, 수출, 가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 3) D는 상업등기부상 F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E의 대표자로 등기된 G가 E 뿐만 아니라 D까지 사실상 지배하며 함께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D, E과의 거래

1) 원고 A, D 사이의 자금대여

가) 원고 A는 D에게 사업자금 1,000,000,000원을 변제일 2019. 12. 30.,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9. 9. 16. 300,000,000원, 2019. 9. 20. 500,000,000원, 2019. 9. 30. 200,00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고, 2019. 9. 30. 채권자를 원고 A, 채무자를 D, G, F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A 및 D, G, F이 각 날인하였다.

나) 그러나 D, G, F은 위 변제일인 2019. 12. 30.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 B, D, E의 선하증권 매매계약

가) 원고 B은 2020. 1. 27.경 G로부터 '냉동 돼지고기 선하증권 10장을 2020. 1. 28.에 4장, 2020. 1. 29.에 6장 나누어서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28. 우선 선하증권 4장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G로부터 위 선하증권 4장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 B은 선하증권 6장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2020. 1. 29. G와 협의하여, 원고 B을 매수인, D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다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5:21경 위 선하증권 매매대금 455,238,4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E의 채무변제 등

1) D는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2,239,785원을 선하증권 1장을 인도받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82,998,615원을 포함하여 D의 계좌에 있던 469,693,600원을 2019. 1. 29. 17:53경 E으로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하였고, E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 중 378,767,630원을 같은 날 19:26경 E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이체행위 후에도, G, D,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하증권 6장을 인도하여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 G에 대한 형사판결 경과

1) 한편, 원고 B은 2020. 2.경 G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G는 202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810)되었다.

2) 위 사건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사건 등과 병합되어, G는 2021. 11. 12.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69)에서도 2022. 5. 12.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6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금전이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2022. 5. 19.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D의 E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법률상 원인을 특정하고 있고, 증여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 A의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체행위 무렵에도 위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고 B의 채권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B와 D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은 E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E의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명의자만을 D로 한 것이고, 실제 계약당사자는 원고 B과 E이다.

(2) 따라서 원고 B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원고 B이 D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및 2022. 1. 13. 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B와 D로 봄이 타당하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D의 실질적 운영자인 G가 D를 통해 원고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은 D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원고 B, 매도인란에 D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E이라는 점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도 D와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보이고¹⁾, D는 실제로 축산물 수·출입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원고 B 외에 많은 업체들과 거래를 이어왔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B이 E의 대표자인 G와 협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G는 D의 상업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므로, 원고 B으로서 G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하고, D 명의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D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E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E의 채권자들에게 보전처분 등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G도 이러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를 E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2) 따라서 원고 B의 D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D의 무자력에 대하여

가) D가 이 사건 이체행위 무렵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무 1,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455,238,4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D가 주채무자, F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채무를 D가 변제하지 못하여 F이 파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하단20441)에 이른 점, ② D는 2013.경부터 I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있을 무렵부터 위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4. 22.경에는 I으로부터 차임지급요청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③ 그에 반해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20. 1. 29. 기준 잔액은 3,844,254원으로 D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비하여 현저히 액수가 적고, 2020. 7.경부터는 위 계좌의 잔액이 변동 없이 20,000원으로 유지된 점, ④ 그 외에 D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기타 채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이체행위는 D의 E에 대한 증여행위이므로³⁾,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체행위는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참조), 한편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이 경우 전득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전득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 및 2022. 1. 13. 자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E과 축산물 수입, 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꾸준히 하여왔고, D와는 거래관계가 없었다. 또한 E과 D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D의 상업등기부상 G가 D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외관은 보이지 않으므로, E과 거래관계를 맺어온 피고로서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와 E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특별히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만한 지위(예컨대, 피고 대표자인 K과 G 사이에 친척, 인척과 같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등)있었다고 보아지지도 않는다.

② 피고는 2019. 11.경부터 E과 거래하면서 E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 또한 수시로 위 미수금채권을 변제하였다가, 추가 거래로 인해 다시 미수금채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왔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E의 자금 출처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E이 아닌 D의 신용상태나 채권자의 존재까지는 알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무렵 E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E이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를 선의의 전득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제행위가 E의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체행위의 존재, D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E의 자금출처까지 알아야할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D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현영, 판사 석지성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 B이 위 계좌로 169,781,941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 B과 D 사이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2)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는 E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후, E이 선하증권 결제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도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 별도의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는 다투고 있지 않다.